

類似名稱 使用 禁止論에 관한 序說的 研究

李允求*

목 차

I. 序論

- (1) 제도의 선진화를 이룩하여야 한다.
- (2) 유사명칭의 사용의 금지는 실용화하여야 한다.
 - ① 유사명칭 사용의 정의론으로부터 정립하여야 한다.
 - ② 유사명칭 사용의 예
- (3) 관광발전은 관광의 제도화로부터 출발한다.

II. 結論

ABSTRACT

I 序 論

관광진흥법 제 22조 제 3항에는 “관광사업자가 아닌 자는 관광 또는 이와 유사한 용어를 포함한 상호를 사용할수 없으며, 표식이나 유사한 표식도 사업장에 붙이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과는 거리가 있는 규정이다. 실정법이면서도 하나의 “선언적인 의미”만을 갖고 있다. 하지만, 시대는 변화였다. 또한 변하고 있다. 원래, 규범이란 그 시대·그 문화에 적합한 규정이 어야

* 경기대학교 교수, 법학박사

한다. 이른바, 관광사업을 운영하는 관광관계법에 있어서도 구조조정이라는 용어가 존재하고 있다. 말하자면 잘못된 제도로 인하여, 실용적인 면 보다는 가설적인 규정이 많다는 뜻이다.

그러나 관광학관계법에 있어서의 구조조정이란 무엇인가?

오늘에 알맞는 새로운 제도 또는 근거를 만들어 내자는 것이다. 관광진흥법에서는 이른바, 제 12조에서의 개선명령과 이에 필요한 규범을 연구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관광진흥법 제 1조로부터 60조에 이르기까지의 내용과 기타 관광관련법의 규범도 연구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그마한 논문에서 이를 다 할 수 없다.

다만, 관광기본법 제 1조에서의 국제친선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향상을 기하기 위한 실용적인 “법률의 개선”도 있어야 한다.

(1) 제도의 선진화를 이룩하여야 한다.

어느 국가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제도의 선진화를 이룩한 곳은 발전하는 것이며 그렇지 못한 곳은 발전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어느 곳이던 법치국가에 있어서는 “서로간의 지킴”을 정하는 것이 규범이다. 그것은 법치제도의 규정이 있어야 한다. 법치제도의 규정이란 규범생활의 발달로 인하여 사람들이 지키는 도덕이나 성문화된 법이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백과사전에 도 제도란 “어떤 내용을 현실화하는 절차”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의 개념은 포괄적인 의미를 갖는다.

규범의 종류에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으로부터 “할 수 있다”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말과 같다.

그형식의 집행력에 있어서도 많은 범위를 서로 달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제도란 하루 아침에 이룩되는 것이 아니다. 오랜 세월동안 장·단점을 실험해 본 후에 “새로운 제도”가 탄생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새로운 탄생”이란 현실에 맞는 제도를 마련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새로운 제도의 탄생을 위해서는 학술적인 연구로부터 현실적인 연구와 세계적인 흐름에 이르기까지 전문적인 연구가 있어야 한다.

이것이 이른바, “Practical Study”이다.

(2) 유사명칭의 사용의 금지는 실용화하여야 한다.

① 유사명칭 사용의 정의론으로부터 정립하여야 한다.

관광진흥법은 관광사업으로 등록 또는 허가를 얻은 업자가 아닌자는 관광이라는 명칭이나 상호를 사용할수 없으며,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는 제도이다.

이것을 관광법의 유사명칭 사용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관광진흥법의 양해규정이나 다른 법률의 양해가 없는데도 다음과 같은 의문을 갖는 유사명칭이 존재하고있다.

②유사명칭 사용의 예

A)관광버스라는 용어를 확인하여야 한다.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수단의 일례로서 이른바, “관광버스”는 관광사업법에 의한 등록업이 아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대형여객버스이다. 그러므로 관광버스란 관광교통업이 새로운 업종으로서, 등록이 가능할 때, 사용할수 있는 이름의 용어이다. 다시말하면 전세버스를 가지고 관광버스라고 하여서는 아니된다.

해운이나 항공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예컨대, 관광해운업이 존재할 때, 해운업에 관광의 용어를 첨가 할수 있으며, 항공의 경우에도 “관광항공업”이라는 예컨대, 헬리콥터 항공이라도 “관광항공업으로서 등록”할수 있는 성문법이 존재할 때, 관광이라는 용어를 사용할수 있을것이다.

B)관광보험이라는 용어

관광보험이란 관광객에게, 미래에 생길지도 모르는 사고에 대하여 회복의 차원에서 “예정보상을 약속하는 경우”이다.

그러나 관광진흥법에 제14조는 보험가입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만을 전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관광보험업”의 규정이 없다.

그렇다고 일반 보험업에 있어서도 정관의 허가 내용에 관광업으로 허가한 것이 아니다.

관광이란 관광업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무엇보다 가장 전제되어다 하는 것이 관광객의 신체보호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관광진흥법에서는 관광객을 위한 보험업의 규정이 없다. 관광사업이 아닌 일반 보험업에서 “관광이라는 용어를 남발”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관광보험업을 연구하는 이가 없다는 산 증거이다.

C)관광농장이라는 용어를 정립하여야 한다.

한국의 관광계에서는 학계나 업계를 막론하고 “관광농업과 농업관광의 용어상의 차이”를 연구한 예가 없다. 당연히, 관광사업에서 “관광농장업”이 존재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성문의 규정이 없다. 일반농업계통에서의 농산물판매를 위한 마케팅 농장장업이 관광농장업인 것 같이 둔갑하고 있을 뿐이다.

관광농장업이야말로 무한정한 연구의 내용을 가진 것으로서 하루속히 관광농장업과 농업관광과의

상이란 존재로서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D)관광식당이라는 용어도 정립하여야 한다.

관광객의 한계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학문의 연구는 없다. 그렇다고 관광객과 일반시민과의 구별을 할 수 있는 제도 또한 없다. 그러다보니 관광객이 찾는 식당을 “관광식당”이라고 해야 한다. 일반인이 일반식당이라고 하는 구별을 할 수 있는 관광진흥법의 규정이 없다. 그러므로 관광식당의 조리사나 일반식당의 조리사의 자격도 같다. 이것은 제도의 연구에서 관광진흥법의 이념에 따라 움직이는 관광식당과 일반 음식점영업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가 성문화 되지 아니하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다.

E)관광중소기업의 육성에 대한 성문화는 대단히 시급하다.

관광학계에서는 “관광중소기업” 또는 “관광벤처 기업”이라는 용어 자체가 연구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관광사업을 하나의 단위로 해석할 때, 관광벤처사업이란 이른바, 운동·오락·휴양·음식을 주로하는 사업인 관광객 이용시설업이나 국제회의용역업 및 소형여행업과 소형 호텔과 그 부수적인 많은 사업을 정의 할 수 있다. 다시말하면 기념품 판매업과 같은 것도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육성이란 관광사업의 진흥에 있어서 관광중소기업의 미래를 위하여, 성문화가 뒷받침하는 방안이 연구하여야 한다.

(3) 관광발전은 관광의 제도화로부터 출발한다.

1)국민관광에 대한 이념의 성문화

관광기본법이 존재하고 있지만 이른바, 국민관광의 기본이념이나 정의론적인 면에서의 성문화가 없다. 이것은 이념도 없는 산재된 용어로서 국민관광이라는 상식적인 용어만을 낱게 하게 하고 있다.

예컨대, 국민관광이란 “국민 누구에게나 관광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모든 국민을 관광교양의 향상과 복지관광의 기본을 이룩하는 내용과 같은 것이다.

2)관광자원 보호를 위한 이념의 성문화를 하여야 한다.

관광진흥법이나 기본법에는 관광자원에 관한 확정적인 규정이 없다. 다만, 관광자원을 가르켜, 자연적자원과 문화적인 자원만이 존재하는 것과 같은, 제 2조 3호의 규정은 잘못된 것이다.

이래가지고는 이른바, 관광자원의 보존과 활용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현대의 자원은 “산업적인 자원과 사회적인 자원”이 관광객유치를 위한 “우선하는 자원”의 시대이기 때문이다. 구태의연하게, 자연과 문화만을, 그것도 어떤 목표의 결정이 없는 문화재 보호법에 의존하

고 있는 것은 의아한 일이다.

3) 한국전통호텔의 확대 장려하는 이념이 성문화되어야 한다.

전통을 전제로 하는 것이 관광사업이다.

그러나 한국전통호텔에 대한 활성화 방안은 없는 것 같다.

4) 관광진흥기금과 벤처산업은 절대적인 유관이 필요하다.

관광진흥기금의 벤처기업에 얼마만큼 융자·지원되었는가를 생각해 보자. 아직껏, 국가 정책상 관광벤처의 논의 자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더욱이, 미래에 있어서도 세계관광시대를 예견하는 이른바, “관광영향평가의 제도”나 “관광중소기업의 육성”으로 대기업의 적자를 메꿀수 있는 연구를 하여야 한다.

5) 제도화 하여야 하는 법이 많다.

A. 관광중소기업 육성법이 있어야 한다.

B. 국민관광진흥법을 제정하여, 국민관광의 실질적인 비전과 여행소비의 균형발전을 정하여야 한다.

C. 민간외교 진흥법을 제정하여, 국민의 친절과 국제친선의 방향을 정하여야 한다.

D. 관광자원 개발 촉진법을 제정하여, 자원개발과 보존의 적극적인 준비를 하여야 한다.

E. 관광시설 개발 촉진법을 제정하여, 휴양·오락·음식·체육의 기본시설업을 장려하여야 한다.

F. 관광경제 기본법을 제정하여, 관광경제의 균형발전을 구체화하여야 한다.

G. 관광세법을 제정하여, 민간외교 사업으로서의 세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6) 관광약관의 세밀한 규범을 마련하여야 한다.

한국의 관광계에서 여행이나 호텔약관의 해설집 하나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7) “서비스의 구조 개선”을 연구하여야 한다.

관광학계에서는 “서비스질의 측정”을 위한 이른바, “서비스의 고과표” 하나가 없는 것 같다. 있다면 그것은 일반 경영학에서의 서비스 고과표를 가지고 참고하고 있을 뿐이다.

다시말하면 생산업체에서의 인사 고과를 “서비스에서 참고하는 모양”으로 되어있다. 서비스는 나름대로의 무형적인 행동의 과학화를 가지고 인사고과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학계에서도 서비스라는 말은 많으나 예컨대, 비서서비스 또는 생산서비스에서의 고과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 같다. 그러므로 예컨대, 관광경영자와 종사원의 서비스의 개선은 “서비스의 개선지표”와 같은 규범을 입법화하여야 한다는 뜻이다.

II. 結 論

관광사업은 끝이없이 진흥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광진흥에 관한 제도적인 규범의 연구가 필요하다. 진흥을 위한 많은 제도적인 과제중에서 우선 시급한 것이 유사명칭사용 금지에 관한 것이다. 즉, 관광수입의 “수입계정을 증진”시켜야 한다. 그것만이, 관광기본법 제1조의 국민경제의 증진이라는 과제를 해결하는 원인이 될 것이다.

Abstract

A introductory study of prohibition agaist using similar terms

LL.D. Lee, Hang-Gu

It is stipulated in Article 22, Paragraph 3 of Tourism Promotion Law that those who do not work for tourism can not use trade name including "Kwan Kwang" or terms similar with it, and even signs with Kwan Kwang or terms similar with it at a business establishment. The stipulation is, however, away from a reality. It only has a sort of apparent meaning even though it is the positive law. However, times are changed and are changing. A rule should reflect the stipulation suitable for contemporary culture. A term, restructuring, exists in the law related to tourism which is connected with tourist industry. In other words, there are many assumed stipulations away from the practical aspect, because of wrong systems. However, what does the restructuring mean in the law related to tourism? The thing is to make new system or base appropriate to the present situation, and to study improvement ordinances in Article 12 of Tourism Promotion Law and stipulations for those. In order to do these, the contents of Tourism Promotion Law from Article 1 to 60 and stipulations of law related to tourism law should be studied. In doing so, limited paper could not cover all.